

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

소관부서 : 건설과

제정 2012·9·27 조례 제 951호
일부개정 2018·3·28 조례 제1378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9·3·8 조례 제1468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9·4·11 조례 제1481호
일부개정 2020·6·30 조례 제1612호
(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)
일부개정 2022·4·22 조례 제1834호
일부개정 2023·3·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·4·11, 2020·6·30>

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건설업,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·유통업을 말한다.
2. “지역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,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.
3. “지역중소건설업체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.
4. “건설업자”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
5. “지역건설노동자”란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

이 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·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4·11>

⑤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·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·4·22>

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제2장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

제5조(분할발주 등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
2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

이상의 사업

제6조(하도급의 적정성 심사)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·4·11>

제7조(지역 내 생산자재 및 건설기계의 우선사용)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,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4·11>

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역 여성기업인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4·11>

[제목개정 2019·4·11]

제8조(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)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·4·11>

1.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
2.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·신공법·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9·4·11]

제9조(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4·11, 2020·6·30>

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내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4·11, 2020·6·30>

③ 시장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신설 2019·4·11, 개정 2020·6·30>

[제목개정 2020·6·30]

제3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
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1.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
2.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
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 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
4. 건설 관련 신기술·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5.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6.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
7.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
8.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. <개정 2018·3·28, 2019·3·8, 2019·4·11, 2023·3·6>

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개정 2022·4·22>

1.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
2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3. 건설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4. 시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
5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2조(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

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 및 이천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·4·22>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,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되며,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보안유지)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⑲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11조제2항 중 “지역개발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⑳ 및 ㉑ 생략

부칙 <2019·3·8 조례 제1468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11조제2항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2019·4·11 조례 제14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12호,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4·22 조례 제18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㉒ 까지 생략

㉓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11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㉔ 부터 ㉔ 까지 생략